

수입 녹용류 7,930kg 불합격

고가 수입 한약재인 녹용류의 불합격률이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8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총 97건에 이르는 고가 수입 한약재인 녹용류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총 23건, 7천9백30kg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부적합율이 15.6%에 이르렀다.

부적합 판명된 23건중 녹용각은 22건(6.23톤), 생녹용각은 1건(1.7톤)으로 녹용각의 경우 총 92건(30.8톤)을 검사해 부적합율이 검사 건수 대비 23.9%, 검사 물량 대비 17.0%였다.

녹용각 및 생녹용각 부적합 23건중 25~35% 회분함량 기준을 넘긴 부적합이었고 7건은 관능 시험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부적합된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녹용각 수입국은 뉴질랜드산이 23.3톤(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산 4.8톤(15.6%), 중국산 2.14톤(6.9%), 북미산 0.55톤(1.8%) 순이었다.

생녹용각은 뉴질랜드 및 북미산이었다.

수입 녹용각 92건에 대한 검사결과 69건은 적합 판명돼 통관됐고 22건은 부적합으로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었고 나머지 1건(약 4톤)은 자진 취하했다.

수입국별 녹용각 검사 결과를 보면 뉴질랜드산 녹용각은 62건중 8건이 부적합 처리돼 부적합율은 12.9%였으며, 부적합 내용은 부패 변질, 분골 절단, 미성숙 뿌 등 관능 시험 부적합이 4건, 회분 함량 불합격이 4건이었다.

러시아산 녹용각은 13건중 5건이 모두 회분 함량 부적합으로 38.5%의 부적합율을 보였다.

중국산 녹용각은 12건중 7건이 부적합돼 58.3%의 가장 높은 부적합율을 기록했으며, 1건은 관능시험 부적합(부패), 나머지 6건은 회분 부적합으로 밝혀졌다.

북미산 녹용각의 경우 4건중 2건이 부적합돼 50%의 부적합율을 나타냈고 모두 회분 함량 부적합이었다.

수입 생녹용각 5건(4.1톤)중 4건(2.5톤)은 적합했고 부적합 1건(1.7톤)은 반송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서 녹용류 수입시 수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절차 △관능 검사 요령 △판정 기준 등을 안내하는 「녹용 품질 검사 절차」를 제작해 관련단체 등에 배포했다.

따라서 수입 통관전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고가 수입 한약재의 품질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수입녹용 관련업계 반응

이번 식약청의 고가 수입 한약재인 녹용류 검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수입녹용 관련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녹용류에 대한 규격 기준 등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고, 검사 규정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검사 규정은 녹용류를 검사할 때 시료를 제외하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판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녹용각 처리현황('98.6.1~12.31)>

| 수입처 | 건 수 | 물 량 | 부적합 건수 | 부적물량 |
|-------|-----------------------|-------|----------------|-------|
| 뉴질랜드 | 62 | 23.3톤 | 8건(관능4, 회분4) | 2.66톤 |
| 러 시 아 | 13 | 4.8톤 | 5건(회분5) | 1.37톤 |
| 중 국 | 12 | 2.14톤 | 7건(관능1, 회분6) | 1.10톤 |
| 북 미 | 4 | 0.55톤 | 2건(회분2) | 1.10톤 |
| 총 계 | 92건 (자진취하 1건포함) | 30.8톤 | 22건(관능5, 회분17) | 6.23톤 |

<생녹용각 처리현황('98.6.1~12.31)>

| 수입처 | 건 수 | 물 량 | 부적합 건수 | 부적물량 |
|------|-----|------|--------|------|
| 뉴질랜드 | 4 | 2.5톤 | 없음 | 없음 |
| 북 미 | 1 | 1.7톤 | 1건(회분) | 1.7톤 |
| 총 계 | 5건 | 4.2톤 | 1건 | 1.7톤 |

<'98수입녹용 처리현황>

('98.12.31 현재)

| 종류 | 접 수 | 처리 | 적 합 | 부적합 | 자진취하 |
|------|---|-----|-----------------------------|----------------------|---------|
| 녹용각 | 109건 | 92건 | 69건 (일부 관능 부적합 4건 포함) | 22건 관능:5 회분:17 | 1 |
| | 총수입량 | | 통관량 | 부적량 | 자진취하량 |
| | 38,541.55kg | | 22,704kg | 2,235.13kg | 4,000kg |
| | 총금액 | | | | |
| | 3,313,119.00\$ (1,483,326,186 원 제외) | | | | |
| 생녹용각 | 18건 | 5건 | 4건 | 회분:1건 | |
| | 20,123.28kg | | 2,496.56kg | 1,685kg | |
| | CD 122 NZD 444 | | | | |

※CD : Canada Dollar

※NZD : New Zealand Dollar

※금액중 원화는 압수물품의 판매예정가로서 제외함.

그러나 검사기간이 최고 35일까지 소요돼 관련업소는 자금 유동을 위해 제품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어치 제품을 장기간 쌓아 놓고선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재검 제도가 없다는 것도 업계는 문제점으로 꼽는다.

녹용류의 성상 등 관능검사는 이해가 되더라도 회분율이 기준 이상이 됐을때 재검을 거쳐 불합격 부위만을 못쓰도록 하지 않고 무조건 반품 또는 폐기토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의약품인 녹용류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과 유통업소 그리고 한방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녹용류를 수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특소세, 관세, 부가세 등 대략 50%에 이른다.

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녹용류를 검사하는 방법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제일 아랫부분을 절단해 회분율을 따지는 것은 모순이란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평균법을 적용 상·중·하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평균 회분율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녹용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두고

고 식약청이 인력을 탓하는 것도 불만을 가중시키는 이유로 든다.

수입업자가 특소세 등 과도한 세금을 지불하는데도 인력 탓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검사 결과만 발표하는 식약청 생리에 관련 업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이 있다.*